

상 품 요 약 서

(단체상해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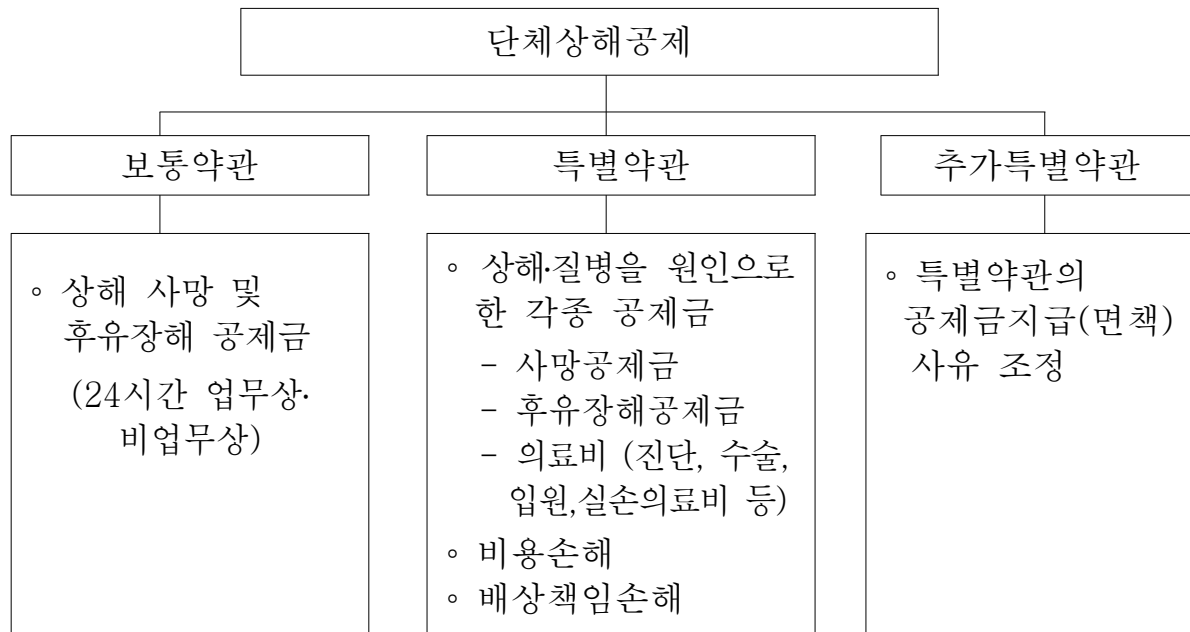
1. 상품개요

- ☐ 단체상해공제는 공제기간 중에 상해, 질병,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피공제자에게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하는 상품
- ☐ 상해로 인한 사망공제금과 후유장해공제금을 기본으로 보장하며, 그 밖에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상해·질병을 원인으로 한 사망 공제금·후유장해공제금·각종 의료비(진단비, 수술비, 입원일당, 실손의료비 등)와 소득보상금, 비용손해 등 보장
- ☐ 조합원이 소속 임직원을 위하여 가입하는 복지성 상품

2. 상품의 특징

- ☐ 공제계약자 : 5인 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조합원사
- ☐ 피공제자 : 공제계약자의 소속 임직원(대표이사 및 임원, 직원)
- ☐ 공제기간 : 1년이 원칙
- ☐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
- ☐ 만15세 미만자의 사망을 공제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 그 밖에 조합이 정하는 기준(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음

3. 약관 구성



☐ 보통약관

상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를 담보하고 상해공제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을 정의

☐ 특별약관

보통약관에 부가하여 보장범위 조정

- 보통약관에서 정한 상해 사망·후유장해공제금의 보장범위 및 면책사유 조정
- 각종 보장담보 추가

상해·질병을 원인으로 한 각종 사망공제금·후유장해공제금·의료비(진단비, 수술비, 입원일당, 실손의료비 등)와 소득보상금, 비용손해 등으로 보장범위 확대
- 그 밖에 상품운영에 필요한 공제료 분납·정산방법 등을 정함

☐ 추가특별약관

- 특별약관에 부가하여 관련 특별약관의 공제금지급(면책) 사유 조정

4. 약관의 종류 및 주요내용

☐ 보통약관

1) 공제금의 지급사유

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피공제자가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사망공제금이나 장해율에 따른 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

2)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피공제자(공제수익자, 계약자)가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 피공제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피공제자의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목적의 행위(전문등반, 자동차 경기, 직무상 선박 탑승 등)로 인한 경우

☐ (추가)특별약관

1) 공제금의 지급사유

해당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한 내용에 따름

2)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대부분 보통약관의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준용하며, 필요시 특별약관에서 별도로 정함
- 주요 면책사유
 - 계약전 알릴의무에 해당하는 중요한 질병으로 (최초 계약의) 공제기간 개시 전에 진단 또는 치료받은 경우
 - 실손의료비의 경우 치료목적외의 의료비, 치과·한방치료의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의료비 등

□ 주요 약관 및 보장내용

1) 주요 특별약관

보장구분	보 장 내 용	관련 주요특약
사망및 후유장해	공제기간 중에 특별약관에 기재된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시 사망공제금 또는 후유장해공제금 지급	○업무중상해, 업무외상해, 교통상해, 해외여행상해 등 ○질병사망, 암사망, 파로사, 심장질환사망, 해외여행질병사망 등
진단비	공제기간 중에 특별약관에 기재된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골절, 화상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암
입원일당	공제기간 중에 특별약관에 기재된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1일에 대하여 일당액 지급	○상해 입원일당 [()일 이상] ○질병 입원일당 [()일 이상], 암 입원일당

보장구분	보 장 내 용	관련 주요특약
수술비	공제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수술을 한 경우 약정 금액 지급	○ 골절수술비, 화상수술비 ○ 상해·질병 수술비
치아 치료비	공제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영구치에 손상이 생겨 복구를 위한 보존치료를 하거나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약정금액 지급	○ 치아보존치료비 I,II ○ 치아보철치료비 I,II ○ 치주질환치료비
실손 의료비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입원·통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하여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상	○ 실손의료비 ○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 해외체류 실손의료비
소득 보상금	약관에서 정한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애상태가 되거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약정금액 지급	○ 상해, 업무중상해, 교통상해, 휴일교통상해 ○ 휴업손해보상금
비용손해	약관에서 정한 비용발생시 약정금액 지급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 ○ 홀인원비용(공제기간중1회) 특별약관
배상책임 손해	일상생활중 제3자의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 일상생활배상책임(본인,배우자) ○ 골프중배상책임

2) 주요 추가특별약관

약 관 명	보 장 내 용
실손의료비 상해확장보장 추가특별약관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에 부가하여, 공제기간 중 발생한 상해 입원(통원)의료비가 공제기간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보상 *갱신계약 : 다른 보험사에서 조합으로 이전한 경우도 포함

약 관 명	보 장 내 용
실손의료비 질병확장보장 추가특별약관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에 부가하여, 공제기간 중에 발생된 질병 입원(통원)의료비가 과거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질병(계약전 알릴의무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한 것인 경우에도 보상
입원의료비 한방(비급여) 추가특별약관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에 부가하여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한방(비급여) 입원의료비에 대해서도 보상 보상제외: 한방물리요법(수기,온열등), 치료목적외의 침술(비만 등) 및 투약·첩약
입원의료비 치과(비급여) 추가특별약관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에 부가하여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치과(비급여) 입원의료비에 대해서도 보상 보상제외 : 심미적 시술비용, 치아보철·보존·금관·틀니· 의치·임플란트
질병입원의료비 출산확장 추가특별약관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에 부가하여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피공제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포함), 산후기로 인한 입원 의료비에 대해서도 보상 보상제외 : 불임 검사(시술), 출산이전 양수·기형아검사, 임신중 빈혈제·영양제 복용
질병통원의료비 출산확장 추가특별약관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에 부가하여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피공제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포함), 산후기로 인한 통원 의료비에 대해서도 보상 보상제외 : 불임 검사(시술), 출산이전 양수·기형아검사, 임신중 빈혈제·영양제 복용
해외여행(체류) 관련 항공기납치 추가특별약관	「해외여행(체류)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특별약관」에 부가하여 해외여행(체류) 중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되어 예정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0일을 한도로 매일 7만원씩 지급
해외여행(체류) 특별비용 추가특별약관	「해외여행(체류)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특별약관」 또는 「해외여행(체류) 질병사망 및 80%이상 고도후유장해 특별 약관」에 부가하여 해외여행(체류) 중 조난, 사망 또는 14일 이상 계속입원한 경우 수색구조비용, 왕복교통비, 숙박비, 이송비, 제잡비를 보상

3) 주요 제도성 (추가)특별약관

약관명	내용
단체계약 특별약관	피공제자는 특약에서 정한 5인 이상의 단체에 소속된 자이어야하며, 단체를 대표하여 계약자가 된 자는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행사함
공제료정산 추가특별약관	단체계약 특별약관에 부가하여 사용, 공제기간 중에 피공제자가 증가, 감소 또는 교체되더라도 이에 따른 공제료는 공제기간이 만료된 때에 정산하며(단, 피공제자 변동내역은 매월 10일까지 제출), 공제료 정산 전이라도 해당 피공제자에게 생긴 손해는 보상함
가족확장(배우자,자녀) 특별약관	피공제자의 범위를 단체소속 임직원의 가족(배우자 및 만24세 이하 미혼자녀)으로 확대

본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주요내용만을 일부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제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